2020년도 제2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0. 10. 15.(목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심장섭, 위정현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4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선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21건(안건번호 제2020-133427호~13403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33427호는 일본 가수의 음원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댓글에 이메일을 기재하면 일본 음원을 보내주겠다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33428호는 일본 가수의 음원 파일을 '☆☆☆ ☆☆☆☆'를 이용하여 복제·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내 불법복제물이 모두 삭제되어 심의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133429호~133432호는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33433호는 만화 한 화 전체 분량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이러한 불법복제물 게시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1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4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선임: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4쪽의 저작물명, 사이트명, 6쪽의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선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후지TV', 'MBN',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일본TV도쿄', '미국 NBC', 'Netflix', 'Adobe Systems Inc.',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판씨네마(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미국 Paramount Network'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선임: 금일 심의안건은 3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12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0-133427호~134039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133427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카페 이용자 '△△'가 일

본 가수 '▲▲ ▲▲▲'의 음원 '▼▼▼ ▼▼▼▼' 공연 영상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한 사안임.게시글 하단에는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 ★★★'의 '◆◆◆◆◆◆◆◆ ◆◆◆◆◆' 앨범 음원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함께 게시함. 참고로 해당 앨범은 현재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가수의 공연 영상을 2개의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음. 게시물 하단에는 "◇◇◇◇◇◇◇◇◇◇◇◇◇◇◇"라고 안내하고 있음.

- A 위원: 해당 가수의 영상을 스트리밍 영상을 소개해주면서 댓글에 이메일을 달면,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안내하고 있는 앨범의 수록곡을 파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선임: 그러함.

- B 위원: 해당 카페가 공개형인지?

- 오진해 선임: 해당 카페는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음. 현재 카페의 회원수는 9,823명임.

- A 위원: 회원수가 약 9,800명이면, 큰 규모의 카페임.

- B 위원: 즐겨찾기 멤버수는 725명임.

- 오진해 선임: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과 같은 직접증거 없이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

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음. 다만 직접증거 없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한편,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에게 반복하여 동일 저작물을 발송하는 행위가 불법복제물의 전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이용 제공하는 경우라야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이메일로 특정한 개인에게 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게시물에 대한 댓글은 모두 공개 댓글로 되어 있으며, 2020. 10. 8. 기준 41개의 댓글이 달려 있음. 댓글 작성자가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게시자가 ‘○○○○○○○○○○○○○○○○○○○○○○○○○○○○○’ 라고 댓글을 달음. 그렇다면 저작권법상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2개의 저작물이 게시되거나 댓글을 달면 이메일로 음원 파일을 보내준다고 되어있음. 해당 안건의 저작물이 어떠한 것으로 특정이 되어있는지?

- 오진해 선임: 스트리밍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 ▲▲▲'의 '▼▼▼ ▼▼▼▼'를 특정하여 심의에 회부됨.

- C 위원: 다른 스트리밍에서는 '▲▲ ▲▲▲'의 '□□□'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A 위원: 해당 게시물에 여러 개의 저작물이 함께 제공되고 있음.

- 오진해 선임: 1개의 URL에 여러 개의 저작물이 게시되는 경우, 게시된 저작물 중 1개의 저작물을 특정하여 심의에 회부함. 게시된 저작물 모두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됨.

- C 위원: 해당 카페의 게시판 '☆☆☆☆☆', '☆☆☆☆☆☆' 접속하여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선임: (해당 게시판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다수의 일본 가수의 음원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해당 카페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게시물 확인 할 수 있음.

- B 위원: 해당 게시판의 게시물들은 모두 불법복제물로 추정됨. 시정권고 조치해야 하는 건 아닌지?

- 오진해 선임: 해당 게시판의 게시물의 경우, 민원인이 게시물을 신고하거나 보호원에서 모니터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정권고의 대상은 아님.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

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3342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133427호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C 위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3427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3428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네이버 카페 URL을 기초로 보호원이 '☆☆☆ ☆☆☆☆'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13342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네이버 카페 게시물의 직접 링크(direct link)를 통해 연결되는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여 카페 링크 게시물에 명시된 비밀번호 '★★★★'을 입력하면 일본 가수 '▼▼▼▼'의 음원 '▼▼▼▼▼▼▼▼▼' 등 11개의 음원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직접링크게시물의 작성자와 클라우드 계정의 계정주는 동일 인물인 '☆☆☆'이며, 해당 합법 음원은 현재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되고 있음.

2020 7. 28.에 개최된 전체위원회는 네이버 게시물의 직접 링크(direct link)를 통해 연결되는 '○○○○○' 웹페이지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의결한 바 있음. 또한, 2020. 8. 14.에 개최된 제3분과위원회는 민원인이 신고한 직접링크 게시물에 의해 연결된 원천게시물인 국내 서버 저장 애니메이션 파일에 대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한 바 있음. 직접 링크 게시물을 통해 연결되는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 서버에 저장된 원천게시물이라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입장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 '☆☆☆ ☆☆☆☆'에 저장된 음원은 모두 현재 삭제되어 있으며, 폴더만 남아있음. 민원인이 신고한 카페 게시물 역시 현재 삭제되어 있는 상태임.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이 모두 삭제된 상태이나, 앨범명을 이용한 폴더는 삭제되지 않았고, 민원인이 신고한 네이버 카페 게시글은 '★★★★★ ★★★★★★'라고 미리 공유 기한을 기재하고 있는 등 언제든지 심의대상 게시물 내 폴더

를 이용하여 복제·전송이 재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음.

- B 위원: 현재는 해당 클라우드에 접근 할 수 없는 것인지?

- 오진해 선임: 그러함. 민원인이 신고한 카페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심의대상 게시물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불법복제물도 삭제된 상태임.
  심의위원회는 심의일 현재 비공개전환된 게시물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 후 복제·전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를 가결하여온 바 있음.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 내 불법복제물 및 심의대상 게시물로 이동하는 링크 게시물이 모두 삭제되었으므로, 단순 비공개전환된 게시물과 달리 심의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여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3342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내 불법복제물이 모두 삭제되어 심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임.

- A, B 위원: 이견 없음.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3428호는 부결함.

- 오진해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3429호~13343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 '◇◇◇◇ ◇◇◇◇', '◇◇◇◇ ◇◇ ◇◇◇'를 30 포인트 내지 50 포인트에 각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4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0-133429호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82화를 50 포인트에 판매함. 인터넷 서점에서 단행본 1권당 약 4,950원에 판매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0-133430호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44화를 50 포인트에 판매함. 인터넷 서점에서 단행본 1권당 약 6,300원에 판매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0-133431호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55화를 40 포인트에 판매함. 인터넷 서점에서 단행본 1권당 약 4,500원에 판매되고 있음. 게시물 본문에 '○○ ○○○ ○○ ○○○", "○○○○ ○○○○○"라고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음.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제2020-133432호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30화를 30 포인트에 판매함. 인터넷 서점에서 단행본 1권당

약 6,300원에 판매되고 있음. 게시물 본문에 "○○○○ ○○○○○○○○ ○○ ○○○○○○○○○"라고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음.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33429호~13343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3429호~133432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3433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이용자 '○○○ ○○○'이 블로그에 일본 만화 '★★★ ★★★' 7~9화 번역본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에는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추정됨. 참고로 해당 저작물은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지 아니함.
일반적으로 만화는 대상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익살스럽고 간명하게 사회를 풍자·비판하는 그림 형식을 말하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만화의 유형은 서사만화 또는 극화로서 소설처럼 긴 스토리(story)를 그림과 대화로써 풀어낸 것임. 서사만화는 스토리, 인물들의 대화, 컷 나누기, 컷 내의 그림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음. 만화는 소설처럼 글로만 표현되는 장르가 아니고 그림을 통한 이야기의 전개가 필수적인 요소로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정하고 스토리를 쓰는 작업과 이를 연출하기 위해 다양한 모양과 형식의 컷을 나누고 배치하여 그림을 그리는 작업 모두가 필요함.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말풍선 속 대화 번역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말로 번역한 만화는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함.

대법원은 “원저작물인 ‘라파예트’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글 자막으로 삽입하여 ‘라파예트’ dvd(이하 ‘이 사건 dvd’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dvd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vd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하지만 본 건의 게시자는 타인이 우리말로 무단 번역한 만화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어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말풍선 속 우리말 번역에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고 그림 부분의 복제·전송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는 점, 오히려 이러한 불법복제물 게시를 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3343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만화 한 화 전체 분량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해당될 여지는 거의 없으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C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3433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선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3434호~13403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나는 자연인이다'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3435호는 방송 '나는 자연인이다'임. 모바일 웹하드에서 2020. 10. 7.에 방영한 420화를 62 포인트에 판매중임. 방영기간은 2012. 8. 22.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임. 이승윤, 윤택 등이 출연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650원 대여 가능함.
  (방송 '프리즌 브레이크'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33496호는 방송 ‘프리즌 브레이크’임. 모바일 웹하드에서 미국 드라마 프리즌브레이크 시즌5의 0화~9화를 490 포인트에 판매중임. 방영기간은 2017. 4. 4.부터 5. 30.까지 방영됨. 마이클 스코필드, 링컨 버로우스, 사라 탠크레디 등이 출연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100원 구매, 800원 대여 가능함.

(SW ‘Sketchup Pro 2018’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360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Sketchup Pro 2018’을 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저작권사는 ’Trimble‘임. 크랙이 완료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trial version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1년 360,000원에 이용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33434호~13403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B,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33434호~ 134039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3434호~13403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3428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0-133427호, 제2020-133429호~13403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2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0. 28.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